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6. 9(금) 10:00

제244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복지가족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357호
- 나. 제 출 자 : 고영찬의원
- 다. 제출일자 : 2023. 5. 31.
- 라. 회부일자 : 2023. 5. 31.

2. 제안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및 기준 (안 제4조 및 제5조)
- 라. 위반차량 조치 (안 제6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2)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 다. 입법예고 : 2023. 6. 1. ~ 2023. 6. 7.

5. 검토의견

가. 제정 이유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 주차구역을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의원발의되었으며 총 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주요 내용

- 1)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 2)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3)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및 기준 (안 제4조 및 제5조)
- 4) 위반차량 조치 (안 제6조)

다.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공공기관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 사료됨.

다만,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조례가 이미 시행되고 있으므로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보다 통합화된 관리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 1.] [법률 제19092호, 2022. 12. 16., 일부개정]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 「국가보훈 기본법」

[시행 2017. 6. 21.] [법률 제14459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